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5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박상웅·송석준·정동만
조은희·김미애·강승규
김상훈·김대식·유용원
박덕흠·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전환 시책과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보험의 개발·도입·보급 지원과 농림수산 전환 시책 시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 나.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전환 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농림수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로, “이를 지원”을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제 및 금융지원
2. 전환하는 업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3. 공공조달계약의 우대 및 판로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신 설></u></p>	<p><u>1. 세제 및 금융지원</u></p>
<p><u><신 설></u></p>	<p><u>2. 전환하는 업종에 대한 인허</u></p>
<p></p>	<p><u>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u></p>
<p></p>	<p><u>특례의 적용</u></p>
<p><u><신 설></u></p>	<p><u>3. 공공조달계약의 우대 및 판</u></p>
<p></p>	<p><u>로지원</u></p>
<p><u><신 설></u></p>	<p><u>4.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u></p>
<p></p>	<p><u>정적·기술적 지원</u></p>
<p><u><신 설></u></p>	<p><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u></p>
<p></p>	<p><u>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기</u></p>
<p></p>	<p><u>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u></p>
<p></p>	<p><u>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u></p>
<p></p>	<p><u>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생 략)</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